

2025년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(1차) 안내

◎ 교육 협조사항

- 교육 신청 후 **사유서 제출 없이 불참 시, 향후 1년 간 교육 이수가 불가능합니다.**
- 교육장에는 교육생 외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.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◎ 교육 신청 전 유의사항

-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의 경우, 국제결혼중개업 신규 등록을 위한 **필수 교육**입니다. 결혼중개업 결격사유 해당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. 이에 신중한 교육 신청을 당부드립니다.

연번	결혼중개업 결격사유	예	아니오
1	미성년자·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	
2	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		
3	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		
4	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형법」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, 「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의2,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, 「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또는 「출입국관리법」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		
5	외국인 현지 형사법령 또는 행정법령을 위반하여 형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		
6	법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		
7	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		

□ **교육 일시 : 2025. 3. 26.(수) 9:20~17:30**

구 분	세부내용	강 사	비 고
09:20~09:50	30'	본인 확인 및 등록	
10:00~11:00	60'	< 다문화사회이해 >	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
11:00~12:00	60'	< 결혼중개업 관리제도 >	법률 전문가
12:00~13:00	60'	중 식	개별 중식
13:00~15:00	120'	< 결혼중개업자의 직업윤리 및 인권 >	인권교육 전문강사
15:00~16:00	60'	< 소비자 분쟁 해결 방안 >	한국소비자원
16:00~17:00	60'	< 결혼중개업 실무 >	관련 실무자
17:00~17:30	30'	수료증 발급 및 마무리	사전 수령 불가

※ 교육 장소 :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교육장(서울 소재), 교육대상자에 개별 안내 예정

□ **수료 기준 및 교육 운영**

○ 수료 기준 : 총 교육시간의 **90% 이상 출석 시 수료증 발급**

※ 개별 과목별 수료 불가

○ 교육 중 소란 및 방해행위, 교육 태도 불량 등 교육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 2회 경고 조치 후 퇴실 및 수료증 미발급

※ 음주 행위는 경고 없이 즉시 퇴실

□ **교육 신청 및 취소**

○ 신청 및 취소 기간

구 분	기 간	비 고
교육 신청	3. 4.(화) 09:00 ~ 3. 7.(금) 17:00	선착순 접수 60명, 이후 대기자 접수 (접수 인원 마감 시 홈페이지 공지)
교육 취소 (사유서 제출)	3. 4.(화) 09:00 ~ 3. 7.(금) 12:00	미제출 시 향후 1년 간 교육 이수 불가

○ 신청 및 취소 방법

- 온라인 교육 신청서 및 취소 신청서 제출 (해당 공지 폼 주소 및 첨부 매뉴얼 확인)

※ 이메일, 팩스 신청 불가/ 안내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에 있음

□ **교육대상자 선정 발표 : 3. 14.(금) 개별 문자 안내**

□ **교육 준비물 (필수) : 신분증, 필기구, 수료증 보관 파일**

※ 신분증은 [모바일을 포함한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]만 인정, 그 외 불인정

□ **교육 문의 :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식개선사업부 (02-3479-7731, 7735)**

※ 교육과 관련하지 않은 문의는 응대 불가능